

등록번호	시장경제과-20965
등록일자	2015.5.14.
결재일자	2015.5.1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경제진흥팀장	시장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
황인숙	김승희	이재호	전결 05/14 박진석
협 조	안전치수과장	허병호	

2015년도 침수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계획

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신속한 복구 및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015년도 침수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계획



기획재정국
시장경제과

I 추진근거

-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-19호)
- 2015년도 침수 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지원계획 통보 [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-6798(2015.5.12.)]

II 추진방향

-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
- 정책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도모

III 추진계획

긴급복구비 지원

- 지원대상 : 침수피해 소상공인(영세상가, 공장)

※소상공인

- 광업,제조업,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-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

- 지원내용 : 피해 상가당 차등없이 100만원
- 지원절차

1 피해신고 접수

- 접수처 : 시장경제과, 동 주민센터
- 접수기간 :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

② 피해현장 확인

- 조사자 : 동 주민센터(1차-접수당일), 시장경제과 직원(2차-보완조사)
- 조사기간 :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
- 조사방법 : 조사표에 의한 현장 확인

③ 긴급복구비 지원

- 지원대상 : 현장조사 결과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
(단순 누수 등 건축물 자체의 결함 등에 의한 침수 제외)
- 지원절차 :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업체 선정하여 복구비 산정, 서울시에 긴급복구비 신청·배정 받아 점포별 지원
(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배정 신청)
- 지원액 : 점포당 100만원(전액 시비)

정책자금 융자지원

- 지원대상 : 침수피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
- 지원내용 : 자금융자지원
- 지원절차

① 피해신고 접수

- 접수처 : 구청(시장경제과), 동 주민센터
- 접수기간 :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

② 피해현장 확인

- 조사자 : 동 주민센터(1차-접수당일), 시장경제과(2차-보완조사)
- 조사기간 :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
- 조사방법 : 조사표에 의한 현장 확인

③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

- 발급절차 : 현장조사 결과 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출이 인정되는 사업장일 경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(단순누수 제외)
- 발급처 : 중구청(시장경제과)

④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대출신청

- 신청방법 : 피해업체가 재해확인증을 지참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대출 신청
- 신청기간 :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
구 분	용자한도	대출금리	상환방법	비고
중소기업	업체당 2억원이내	3.0% (고정금리)	1년 거치	※ 대출금리 3%는 중기청 재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리수준
소상공인	업체당 5천만원 이내		4년 균분상환	

IV 행정사항

- 재해기업 복구 지원 : 안전치수과, 동 주민센터 등
- 재해기업 긴급복구비 지원 및 재해확인증 발급 : 시장경제과

[붙임]

【서식1】 침수피해 공장·상가 현황

【서식2】 침수 영세 공장·상가 피해 현황 확인서

【서식3】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피해 신고서

【서식4】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【서식 1】

침수 피해 공장·상가 현황 (○○동)

(2015. . . 00시 현재)

긴급복구비 지원대상 현황

(단위 :건, 백만원)

구 분	금 일		누 계	
	개 소	피해신고금액	개 소	피해신고금액
계	개		개	
영세 공장	개		개	
영세 상가	개		개	
전통시장	개 소 점포		개 소 점포	

※ 긴급복구비 지원대상 참조

※ 전통시장은 일반지역의 영세상가,공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

공장 피해 현황

계	등 록	무 등 록
개	개	개

전통시장 피해 현황 (긴급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및 비지원대상 포함)

구 분	금 일		누 계	
	개 소	점 포 수	개 소	점 포 수
개 소	개	개	개	개
금액(백만원)				

피해복구 현황

구 분	금 일	누 계	복구지원상황
계	개	개	
영세 공장	개	개	
영세 상가	개	개	
전통시장	개 소 점포	개 소 점포	

전통시장 피해복구 현황(긴급복구비 지원대상 사업장 및 비지원대상 포함)

구 분	금 일		누 계	
	개 소	점 포 수	개 소	점 포 수
개 소	개	개	개	개

조치사항, 특이사항, 미답사례, VIP 방문 등

자연재난 피해신고서(중소기업·소상공인)

(앞쪽)

1. 피해자 정보

주소(사업장)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읍·면·동 번지		
성명(대표자/업체명)	/ (주민등록번호: -)		
가족 수	명(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)		
고등학생 수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	고등학교	명[비전문계 / 전문계]
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연락처	전화번호:	휴대전화:	(통신사명:)

2. 피해 내용

※ 피해시설명부터 피해 원인까지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피해 발생 위치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읍·면·동 번지 외				필지
피해시설명	① 건축물	② 기계시설	③ 완제품	④ 원재료	⑤
총면적(소유 + 임차)	①	②	③	④	⑤
사업자등록번호	①	②	③	④	⑤
피해금액	신고	①	②	③	④
	확정	①	②	③	④
피해 구분	①	②	③	④	⑤
피해 원인	①	②	③	④	⑤
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
피해 발생 위치	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읍·면·동 번지 외				필지
피해시설명	⑥	⑦	⑧	⑨	⑩
총면적(소유 + 임차)	⑥	⑦	⑧	⑨	⑩
사업자등록번호	⑥	⑦	⑧	⑨	⑩
피해금액	신고	⑥	⑦	⑧	⑨
	확정	⑥	⑦	⑧	⑨
피해 구분	⑥	⑦	⑧	⑨	⑩
피해 원인	⑥	⑦	⑧	⑨	⑩
용자신청 여부	[]	[]	[]	[]	[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(主) 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

-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른 용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(主) 생계수단 판단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, 보험가입 유형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여 제공 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- 「재해구호법시행령」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재민 등의 구호 및 의연금품의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 내용을 구호기관 및 배분위원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,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인) 피해자와의 관계 [본인, 가족, 이장·통장, 이웃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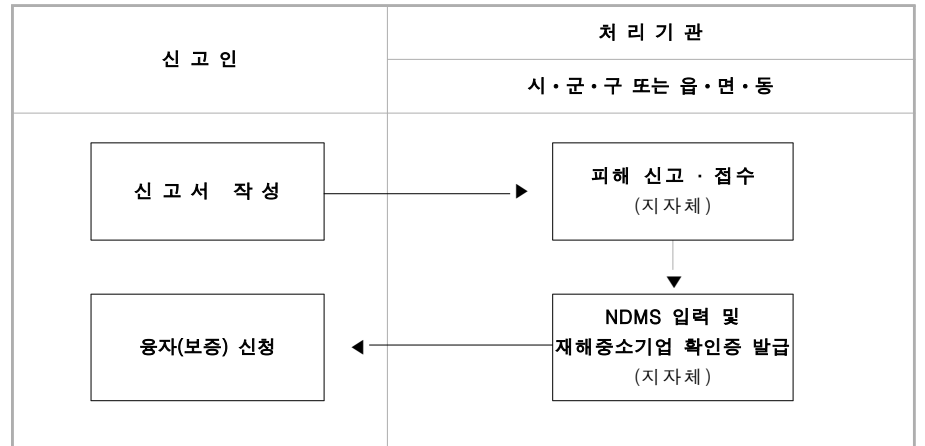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장)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 방법

- 피해신고 대상
 -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(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합니다)
 - 중소기업의 경우, 가족수, 고등학생수,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지 않고, 소상공인만 기입합니다.
- 피해신고 제외 대상
 - 사업자등록상 주소지와 피해 시설물 주소지가 다른 소상공인, 무허가(주택 제외)·비규격 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 및 풍수해보험 등 각종 재난 관련 보험 가입자는 신고 제외(단, 무등록 공장은 신고대상임)
-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[]에는 해당 사항에 ○표 하시기 바랍니다.
- 피해금액란에는 천원 단위로 기입하되,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.
-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/매물/전파/반파/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.
- 음영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.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※ 용자기관 : (중소기업)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, (소상공인) 시중은행 각 지점(단위조합은 제외)

보증기관 : (중소기업)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, (소상공인) 지역신용보증재단

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업 체 명		대표자				
주 소		전 화 (FAX)				
주생산품		매출액 (천 원)				
피해금액 (천 원)	건축물	기계시설	완제품	원자재	기타	합계
	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용자(보증)신청 하시 기 바랍니다.					

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